

2020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안 건》

보고안건 : 홈페이지 개선사항 보고	1
심의안건 1. 인권경영 규정 개정(안)	2
심의안건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안)	6

2020. 7. 23. (목)

■ 보고안건 : 홈페이지 개선사항 보고

1. 개선 목적

- 연구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련의 노력 및 성과 공개 필요
- 인권경영 노력 및 성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계획 수립

2. 심의 결과

- 홈페이지 내 신설된 인권경영 콘텐츠 중 '인권침해상담·신고 센터'의 수정
 - 신고자(성명, 소속)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내용에 기술할 수 있도록 유도
 -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와 '신고를 통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수정

■ 심의안건 1. 인권경영 규정 개정(안)

1. 개정 목적

- 산업연구원 인권경영체계 확립 등을 목적으로「인권경영 규정」제정
 - 2019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연구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인권경영 규정」제정
- 「인권경영 규정」중 “인권보호 약정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 동 규정 제8조(책임있는 협력업체 관리)에서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 인권보호약정서”의 내용이 동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
 - ※ 동 규정 제8조는 계약업체의 인권보호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나, 약정서 내용은 계약업체의 인권보호 미준수 시 계약해지의 권한이 계약업체에 부여

동 규정 제8조(책임있는 협력업체 관리)

②연구원은 외부 업체(계약업체 또는 개인)와의 계약시 해당업체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의무이행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인권보호 약정서)과 같다.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인권보호약정서 내용

당사는 산업연구원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만약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연구원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동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약정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

2. 심의 결과

- ‘인권경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인권보호 약정서”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연구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조정사항 1) 인권보호 약정서 내 가독성 향상을 위해 문장을 분리
 - (조정사항 2)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연구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

<인권보호 약정서> 내용 전문

개 정(전)	개 정(안)
<p>당사는 산업연구원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만약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연구원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당사는 산업연구원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만약,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연구원은 당사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인권경영 규정 개정(안)】

개 정(전)	개 정 (안)
<p>제8조(책임있는 협력업체 관리) ②연구원은 외부 업체(계약업체 또는 개인)와의 계약시 해당업체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의무 이행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보호 약정서)과 같다.</p>	<p>제8조(책임있는 협력업체 관리) ②연구원은 외부 업체(계약업체 또는 개인)와의 계약시 해당업체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의무 이행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보호 약정서)와 같다.</p> <p align="center">부칙 <개정 2020.07.00>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p>

인 권 보 호 약 정 서

당사는 산업연구원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만약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연구원** 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_____ (인)

산 업 연 구 원 장 귀하

인 권 보 호 약 정 서

당사는 산업연구원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만약,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연구원은 당사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_____ (인)

산 업 연 구 원 장 귀하

심의안건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안)

1. 확정 목적

- 「KIET 인권경영 추진계획」및「인권경영 규정」에 의거, 인권영향평가 실시 필요
 - 「KIET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
 - 「인권경영 규정」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에 따라,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시행하도록 규정
-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체크리스트 확정 필요
 -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진단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추진
 - 이를 위해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KIET 인권경영 추진계획」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정”은 인권경영위원회 주요 역할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 필요

2. 심의 결과

○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

√ 평가 부문 : ①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②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평가 시기 : '20. 8월 ~ 9월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총 7개 분야 18개 항목 79개 지표
- 대상 : 부서장 및 지원부서 (약 50여명)

No.	분 야	항 목	No.	분 야	항 목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인권경영 성과	5	강제 노동의 금지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구제 절차 마련	강제 노동 금지				
2	임직원의 인권보호	개인 간 관계	6	산업안전 보장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직장 문화			
3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총 2개 분야 6개 항목 28개 지표
- 대상 : 각 부서별 본부장 및 연구책임자 (약 40여명)

No.	분 야	항 목
1	연구사업	연구사업 선정
		연구사업 수행
		연구사업 관리
		연구사업 평가
2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연구성과 홍보
		연구성과 확산